제27회 제국의회 귀족원 예산위원 제1분과(세입 대장성) 의사속기록 제5회

1911년 2월 28일(화요일) 오전10시 19분 개회

○ 主査 (백작 柳澤保惠 의원 : 분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육군대신이 출석하셨으므로 순서를 바꿔서 조선총독부 문제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 가마다 가쓰타로(鎌田勝太郎) 의원 : 저는 조선문제에 대해 질문할 때 가능하면 당국자와 기탄없이 얘기하고자 하므로 필기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主査 (백작 柳澤保惠 의원) :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중지]

○ 主査 (백작 柳澤保惠 의원) : 지금부터 속기를 ……〔다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마다 가쓰타로(鎌田勝太郎) 의원 : 이번 특별예산 조선총독부에 대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主査 (백작 柳澤保惠 의원) : 하셔도 좋습니다.

○ 가마다 가쓰타로(鎌田勝太郎) 의원 : 어제 철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선의 철도는 호남선이나 경원선도 경부선과 같은 廣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조선에서 幹線의 경우 물론 廣軌가 적합하겠지만, 枝線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輕便한 철도로 할 경우 100리 깔 예산으로 300리 혹은 500리를 까는 방침을 채택하는 편이 현재 조선에서 교통기관을 확충하는 데는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완전하지만 늦게 완성하는 편보다 졸속하고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輕便한 철도를 빠른 시일 내에 敷設하는 편이 정치상으로나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枝線도 간선처럼 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오야곤페이, 大屋權平) : 현재 호남선도 경원선도 모두 긴 노선이므로, 모두 조선의 幹線의 범주에 들어가는 노선이라고 생각하므로, 당장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간선을 어느 정도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철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큰 대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枝가 될 지점이나 혹은 중간을 연결할 지점 등은 輕便한 철도를 설치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선이나 경원선 혹은 기타선에 대해서도, 그 기타선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에서는 幹線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철도를 깔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輕便線으로 하고자 하는 노선 혹은 軌間을 다소 좁히고 철도차량폭도 작게 한 것을 생산하는, 본 철도와 輕便철도와 軌道의 세부분으로 나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나카지마 나가모토(中島永元) 의원 : 조선의 收入 科目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의 항목은

미미한 것이 많고, 地租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수입이 늘어 상당한 재원이 될 만한 전망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조선의 세입은 지금 질문하신대로 조세액 중에서 地租가 가장 큰 액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선은 늘릴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보이며 실제로 5년 전과만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로 지조는 倍에 가깝게 늘었습니다. 지조의 비율은 오래전에 책정한 자료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를 늘려나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징수 방법면에서 종래 제도를 바꿔 일본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징수제도를 채용한다면 그 결과 國庫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상정한 것이며, 이전 제도에 비해 세율을 증가시켰다거나 새로이 과세구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지조를 어떻게 과세하는가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지역 즉 경성이나 관찰도소재지로 불리는 지역은 지세가 없는데 이점을 앞으로 개선하면 지조 수입이 더욱 증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조는 징수대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과세 대상에서 빠진 토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도 정리한다면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토지는 수십 년 전에 정해진 등급에 의거하여 과세되고 있고 게다가 臺帳 같은 것도 없어 地籍이 아직 판명되지 않은 토지도 많은 상황이므로 지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조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토지 조사는 마치 일본의 지조개정시 행했던 방식처럼 토지의 근본을 정하고 불공평한 부분을 바로잡아 그 근간 부분을 평등하게 한 다음에 세율 및 기타 부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러하므로 어쨌든 일단 지세를 증가시키고자 하더라도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근본을 명확히 하여 현재 토지상황에 맞는 등급을 부여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선결시키지 않으면 地稅 징수에 착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작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토지조사가 끝나면 지세면에서는 비록 세율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현재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토지가 파악되게 될 것이며, 조사방법도 점차적으로 정밀해지면 지세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세에 대해서는 먼저 관세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 역시 급속하게 증가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세율 변경은 불가능합니다만, 경제발전에 동반하여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미미하지만 가옥세, 담배세, 주류세와 같은 항목을 새로이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들은 당장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몇 년 후에는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증세나 새로운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官業으로 할 사업들을 몇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염전을 만들어 소금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염전이 완성되면 다소의 수입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선의 세입은 급격히 증가시킬 수단을 찾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스레 세입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마다 가쓰타로(鎌田勝太郎) 의원 : 도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만, 몇 해 전 조선에 갔을 때 경상북도 경산에서 목격한 사례입니다만, 도로를 만들 때 군수가 나와서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로 건설 부역을 시키는 매우 무계

획적으로 진행하는 현장을 봤습니다만, 물론 韓國時代의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설마 그렇게 행하지 않고 땅을 사서 공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상 부과되는 것입니까?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로에 관해서입니다만, 대체적인 방침에 입각해서 행하는 것인지, 혹은 국도의 경우 폭이 몇 미터, 郡道라면 몇 미터, 里道라면 몇 미터와 같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911년도 예산 計上의 200만엔이라는 돈으로 대략 어느 정도까지 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地方예산으로 도로를 만들 때는 종종 부역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부역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도로를 만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토지에 대해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사들인 다음 도로를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도로 공사를 할 때는, 작년 무렵에는 폭력배에서 갱생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그들을 인부로 쓴 도로 공사도 있었는데 이 인부들이 깐 도로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조선에는 원래 國道·里道·縣道와 같은 구분이 없는데, 이는 일본처럼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불과 人馬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길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국도와 같은 길의 경우 얼마의 폭으로 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고, 현존하는 실제 도로도 정말 좁은 길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식 도로에 준해서 國道·縣道와 같이 구분하고자 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국가 예산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길을 지방예산으로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아직 조사에 의거한 成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200만엔으로 착수할 도로는 전국에 26개 노선, 내년도 이후 5년간에 걸쳐 천만엔을 들여 개척할 도로는 전국적으로 26개선에 총587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은 4間 및 3間의 2종류로, 주요 도로는 4間폭으로, 기타 도로는 3間폭으로 계획중입니다.

○ 니오 고레시게(仁尾惟茂) 의원 : 세입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번연도 세입은 종래 세입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어떤 시기에는 면적당 [結] 수확량이 140만 정도 중에, 각 宮에 속하는 結이 230만, 각 衙門에 속하는 結이 240만 정도이고, 그밖에도 隱結 혹은 免結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아 및 궁의 비용은 結의 수확으로 채우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합병 후 제도에 의해 궁이나 관아의 소유로 된 토지는 없어지게 되었고 그 토지에 대한 稅는 종래 각 궁이나 관아에 납부하던 것이 세금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징수방법은 종래 각 궁이나 관아에 납부하던 그대로인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조선에서 流來地라고 칭해왔던 즉 일본의 荒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적지 않은 면적인 140만결의 4분에 1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입니다만, 이것 역시 종래대로..... (청취 곤란) 이에 대한 개요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토지제도 조사에 착수 중인 상태여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지라도 기존의 각 궁등에서 징수하던 것이 그대로인지, 그리고 荒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그 개요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

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結에 대해서는 구한국 度支部 대장에는 140,150만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징수한 결수는 45년 전까지는 90만결 정도입니다. 이 90만결 정도로 내려간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에도 있었던 것처럼 토지 통결 즉 이른바 荒地와 관련이 됩니다. 荒地를 면세지역으로 간주할 경우 대장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陳荒結라고도 합니다만, 제도가 문란해져가면서 陳荒結에서 제외한 것을 다시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제외된 채로 두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금은 荒地가 아니더라도 종래의 지세 제도가 지방의 관리에게 일임된 형태의 대부분 청부제도였기 때문에, 관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징수한 것의 일부를 숨긴 채 정부에게 납부하는, 소위 吏隱結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즉 징수하는 관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워 버리는 그래서 중앙정부의 대장에서 누락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도 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140만 결 이상 있던 것이 90만결로 감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陳荒結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일본처럼 荒地를 복구하면 그 이후 몇 년간의 荒地면세를 보장해 준다거나 그 몇 년의 시기가 지나면 과세를 한다고 하는 제도는 조선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結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구한 荒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도 상관없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隱結발견장려, 즉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땅을 발견한 자를 포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리가 숨겨왔던 땅인 吏隱結이 실제로 많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여 바로 결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수는 10만결정도입니다. 현재로는 130만결 정도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종래 結稅를 관에 납부하지 않고 그 상당수를 役所나 宮家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용하는, 즉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서는 役所의 비용- 예를 들면 어떤 兵營의 비용- 부담에 사용하거나, 혹은 宮家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그 結을 면세대상으로 하거나, 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役所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宮家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재작년 이래 모두 정리해서, 結稅를 내야 하는 곳은 모두 내도록 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예산 보고 중에 驛屯賭收入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3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驛屯賭收入을 정리해서 宮家의 地面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宮家의 地面 중에는 일반 사람들의 토지인데, 結稅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하지 않는 대신 宮家에 대해 일정액을 상납하도록 하는 토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結稅를 부과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장래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고, 宮家에 대한 상납은 불필요한 것으로 조치하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驛屯土라고 하는 것은 관유지인데, 이 관유지가 전국에 약 10만町步가량 있습니다만, 이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질문에도 있었던 것처럼, 병영 비용 부담을 명받은 특정 마을이 그 비용을 매년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정의 토지를 정부에게 내놓아 그 제공받은 토지의 수입으로 운용하는 형식으로 관에 헌상되었던 토지였습니다. 그 밖에 여러 종류의 동일한 이유로 정부에게 토지를 헌상해 왔는데 이런 토지가 정부소유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무렵까지 궁내성 소유로 되어있거나, 帝室 소유로 되어 있거나, 帝室이 그 토지에서 소작료를 취하기도 했던 땅에 대해, 정부에서 그 토지에 대해 結稅를 과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지역에 대해서도 과세했습니다. 재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908년에 모두 帝室의 地面을 국가의 것으로 옮기고, 국가 소유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모두 소작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소작료는 結稅와 종래의 帝室에 납부하던 소작료를 합하여 그 액수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했으며, 더 이상 國稅는 징수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종래의 황실에 대해 내던 소작료는 징수해 왔었는데, 어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된 이상 세금은 징수하

지 않는 것으로 정했으며, 한편 帝室에 내던 소작료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추가하여 그 금액을 합하여 내도록 정했습니다. 당시 稅라고 칭하지 않고 소작료라는 명칭으로 驛屯賭收入이라고 하여 제3항에 기재해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41년 이후 국고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오후 0시 9분 휴식

오후 1시 25분 개회

○ 主査 (백작柳澤保惠 의원) : 그럼 오전에 이어 개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조선에 관한 질문은 없으십니까?

○ 나카지마 나가모토(中島永元) 의원 :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만.....

○ 子爵 稻垣太祥 의원 : 빠진 부분 중에 여쭈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道掌資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道掌이란 것이 어떤 구역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자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지표로 한 것인지요.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道掌이라는 것은 원래 宮家에 속한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원래 모두 왕족이었던 一司七宮라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 그 칭호만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각각의 宮이 각각의 왕실의 御用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일을 위해 존재했던 것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각의 宮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宮家가 가지고 있던 토지는 1908년에 모두 왕실 재산과 함께 국가 소유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하던 관리인을 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일종의 株처럼 되어 있어서 그 관리인의 株를 시종 매매하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관리인은 상당히 수입이 많았다고 합니다만, 전체 토지 중에서 일정부분을 宮에 상납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리인이 하나의 株를 가진 형태였기 때문에 관리인을 파면한다고 간단히 모든 것이 폐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폐지 당시 관리인이던 사람들에게 3년분의 순수입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3년분의 순수입을 일시금으로 바꾸어 각 관리인에게 지급했습니다. 道掌이란 바로 그 관리인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 子爵稻垣太祥 의원 : 3년분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자인 5842엔이 3년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원금인 약116800엔이 그 금액인가요? 그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3년분의 수입은 116825엔이 해당금액이고, 이것을 5부 이자의 공채로 그 돈을 빌렸을 때 환산한 금액을 관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 나카지마 나가모토(中島永元) 의원 : 지방금융조합보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방금융조합이라고 하면 종래 한국시대부터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이 최근에 생긴 것인가요? 어떤 조직인지요.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이 지방금융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한국정부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는 明治37년에 일본정부로부터 재정고문이 와서 38년에 제반 재정을 개혁하여, 40년에 지방금융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한 것입니다. 구한국정부 시절에는 모든 조세는 각 군수가 징수했는데 군수는 징수한 조세 중에서 징수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중앙정부에 상납하는 형태였습니다. 일종의 請負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군수가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해서 자신의 수중에 둔 채 각 지방에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였기 때문에 각 군수의 징수에는 폐해가 동반되었고 일종의 청부제도 형태이므로 징수한 금액의 반 이상이나 되는 액수도 착복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토지의 금융을 돕는 측면도 다소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 상납하기 전까지는 그 돈을 일시적으로 군수가 융통해서 군수와 가까운 상인에게 대부해 주기도 했으므로 그 지방의 융통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이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폐해가 있는 징세제도였으므로 이후 일본의 징세제도를 본 떠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징수한 돈은 모두 금고에 불입하고 수중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로 바뀌었으므로 징수금은 전부 금고에 들어가 중앙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금융에는 다소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로써 지방에 또 하나의 금융 소통의 길이 마련해야 하고 小農의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당시 일본정부로부터 금융자본 명목으로 150만 엔을 빌려 그 중 일부 금액을 각 지방에 금융조합을 설립하는, 즉 그 금융조합을 만듦과 동시에 중앙으로부터 1만 엔씩 자금을 교부받고 그 조합 이사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일본인을 배치했습니다. 각 조합 이사에 임명된 이사의 봉급은 중앙에서 보조해 주고 자금으로 1만 엔을 금융조합에 교부하는 형태로 각지 금융조합을 明治40년[1907]에 처음으로 설립했습니다. 이 금융조합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농에 대해 1계좌당 50엔 미만으로 한정한 소액 대출을 하거나, 종자나 비료 등을 공동구입하여 소농에게 나눠주고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또한 조합원이 생산한 것을 공동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개소 정도를 세울 예정이었는데, 막상 세워보니 날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현재는 120개소에 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개소를 더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30개소를 세울 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는 소농의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카지마 나가모토(中島永元) 의원 : 郡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입니다만, 조합원이 되는 사람은 그 토지에서 상업이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郡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요한 곳부터 설립할 것을 의미하며, 조합원은 그 지역 사람으로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 나카지마 나가모토(中島永元) 의원 : 해관공사비 항목에 대해서입니다만, 이것은 繼續費로 827만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관은 부산, 인천, 진남포, 평양 이 4곳이라고 보입니다만, 원산 부근은 따로 수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해관공사비 항목 중에 가장 큰 항목이 繼續費인데, 4곳입니다. 그리고 繼續費가 아닌 1년한정비용으로 된 것은 각소에 기입해 두었습니다만, 그 중 원산 세관의 新營 설비비 명목으로 12000엔 정도 됩니다.

○ 主査 (백작柳澤保惠 의원) : 더 이상 조선 관련 항목에서 질문 없으십니까?

○ 니오 고레시게(仁尾惟茂) 의원 : 세출 부분에서 面 교부금이라고 하신 항목말입니다만, 面이라는 것은 소위 일본의 町村에 해당하고, 일본 내에서도 소위 국가가 할 일을 町村이 담당하는 명목으로 町村 자치체 교부금이 있듯이, 조선에서도 따로 일본과 구별하지 않고 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面이라는 것이 징수시에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어서 현실적인 필요에서 얼마 정도 교부하는 것입니까? 일본의 교부금과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조선에서는 원래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군수의 청부에 의존한 양태였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면장에게 또 청부시키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최하급의 행정기관 즉 조세 징수기관이 面이었습니다. 면이 모은 세금을 군수에게 바치면 군수가 이를 모아 관찰사에게 바치는 형태의 순서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청부에서는 역시 면장은 조세를 징수해서 그 중 징수 비용을 빼고 위에 세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징수사무개혁을 하면서 이러한 청부제도를 폐지하고 징수한 세금은 국고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면장에게 얼마의 월급은 지급했지만, 국가가 면장에게 징수한 비용을 별도로 교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면장이 세금을 징수할 때 다소간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에 대한 배상을 위해 일본의 제도를 모방해서 징수한 세금의 2/100는 면에서 교부하도록 하는 면교부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면에서는 이 교부금을 받아서, 이 교부금만으로는 도저히 징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외 중앙정부로부터 一結당 대체적으로 이 정도는 징수비용으로 면에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하는 묵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면장이 부과금을 취하는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군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즉, 면의 징수비용의 일부로 면교부금이라는 것을 교부하는 것을 칭한다고 하겠습니다.

○ 니오 고레시게(仁尾惟茂) 의원 : 그리고 제 5 항에 享祀費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합병이후에 앞으로도 일본이 국비로 경비부담을 해야 할 항목인지 혹은 원래 조선이 국가차원에서 지냈던 것이므로 그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불해야 하게 해야 하는지, 다소 명칭이 애매하고 그 성질이 ……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이는 구한국에서 지내던 것으로 그것을 그대로 합병 후에도 유지하게 할 경우 비용문제가 생깁니다만, 社는 오늘날의 조선국의 시조를 받드는 장소로 총 8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단 즉 국가사직의 사직을 받는 비용, 이것은 전국에 329곳, 공자 聖堂을 모시는 곳이 전국에 328곳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옛부터 조선인들이 숭배하던 곳이 각지에 산재해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내는 부분이 생기므로 이를 칭해 예산에 포함시켜 둔 것입니다.

○ 이시이 쇼이치로(石井省一郎) 의원 : 지금 面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村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일본의 村에 해당합니다.

○ 이시이 쇼이치로(石井省一郎) 의원 : 그리고 이것은 다소 전반적인 것에 걸친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間島에 관한 것입니다만, 간도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순사 같은 사람을 간도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전부 총독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간도는 계속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조선인들이 약1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이곳에 토착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간도에 임시 파출소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지금 질문하신 순사 등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 이시이 쇼이치로(石井省一郎) 의원 :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만, 간도에서는 빈번히 중국의 순사와 마찰이 발생하는 듯하다,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현재 도박 문제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후 중국 경찰과 간도지역에 나가 있는 경찰관간의 알력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알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간도가 어디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간도지방에는 양국의 관헌 간에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이후부터는 일본에서 그쪽 지역에 영사관을 세워 단속을 하고 있고 이후 이러한 알력 다툼 문제는 그다지 없어지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 나카지마 나가모토(中島永元) 의원 : 폭도진압비 항목에 6만 엔이 할당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폭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이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단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입니다만, 100명 이상의 단체는 없고, 100명 미만 혹은 10명이나 20명의 단체 규모의 폭도라고 할 만한 그룹은 없습니다만, 가끔 匪賊에 의한 소동이 있는데 이를 진압시키는 비용을 계재한 것입니다.

○ 니오 고레시게(仁尾惟茂) 의원 : 제5관의 지방비로 500여만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지방행정 비용으로 전적으로 충당하는 즉, 13개도 지방청에 충당해야 할 비용과 기타 지방청의 행정비로 충당해야 할 부분, 기타 군이나 면에 충당될 비용을 제외하고 13개도 지방비 중 전적으로 국고부담에 속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구분이 있다면 기준은 무엇입니까?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지방비 내역에는 당연히 국고의 부담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방 부담으로 해야 할 항목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비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지방비에는 보통지방행정에 속하는 비용과 징세비용에 속하는 항목의 두 항목이 있습니다. 이중 보통지방행정에 속하는 비용은 경찰에 속하는 비용은 전부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경찰비이외의 비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 일본식으로 구별하자면, 도청 경비, 郡守경비항목은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국고에 당연히 포함됩니다만, 郡役所 및 기타 비용은 모두 지방비에 포함되어 있고, 조선에는 모두 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식의 지방행정에서의 지방비에 속하는 것과 중앙의 국고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합친 항목이, 조선의 경우 모두 국비 항목 안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비 구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지방청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니오 고레시게(仁尾惟茂) 의원 : 제1항,2항,3항,4항 이 항목들은 현재 道와 郡의 행정비로 대략적으로 충당되고 있는 항목으로 보면 맞습니까?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3항,4항.....

○ 니오 고레시게(仁尾惟茂) 의원 : 대략 道와 郡의 행정비용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예 맞습니다.

○ 나카지마 나가모토(中島永元) 의원 : 다소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만, 각도 장관은 13개도 중 일본인이 7명, 조선인이 6명인데, 이러한 방식은 다른 곳에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양상입니까? 어느 곳이든 행정사무는 순조롭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 조선인 도장관 하에는 역시 일본인 사무관이 부속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을 도장관으로 채용한 것은 종래 도장관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官制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징세 등의 성적만 본다면, 조선인 도장관 지역과 일본인 도장관 지역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인이 도장관으로 있는 경우도 그 밑에는 일본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 主査 (백작柳澤保惠 의원) : 더 이상 조선총독부 관련 질문은 없습니까?

○ 나카지마 나가모토(中島永元) 의원 : 없습니다.

○ 이시이 쇼이치로(石井省一郎) 의원 : 더 이상 없습니다.

○ 主査 (백작柳澤保惠 의원) : 그러면 조선총독부 관련 논의는 마치겠습니다.
(후략)

출석자는 다음과 같다.
주사 백작 柳澤保惠
委員　子爵　稻垣太祥　위원 子爵　松平親信　위원 男爵　沖守固　위원 男爵　紀俊秀 위원
石井省一郎 위원　中島永元 위원　仁尾惟茂　위원 鎌田勝太郎 위원 桑田熊藏　의원

兼務
伊澤修二

政府委員
朝鮮總督府鐵道局技監　大屋權平　朝鮮總督府度支部長官　荒井賢太郎　朝鮮總督府會計局長
兒玉秀雄　關東都督府民政長官　白仁武　樺太廳長官　平岡定太郎